

제천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

의안 번호	605
----------	-----

제출년월일: 2000. 4.
제출자: 제천시장

1. 제안이유

전통사찰보존법중개정법률 고시에 따라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2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사찰 경내지 주변지역 사유지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전통사찰의 수행환경 해손을 방지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에서 건축을 허가하는 것이 전통사찰의 보호와 풍치보존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함.

3. 근거법령

법률 제 6,135호 전통사찰보존법중개정법률
(2000. 1. 12 고시, 2000. 4. 13 시행)

첨부 : 1. 제천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
2. 기타참고자료(근거법령 등)

제천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2의 규정에서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사찰을 지역 실정에 적합하게 효율적으로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이하 “주변지역”이라고 한다)이라 함은 전통사찰보존 구역의 주변지역으로서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에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 등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주변 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전통사찰과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주변지역을 유지·보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주민은 민족문화유산으로서 전통사찰을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주민은 항상 잘 보전된 주변지역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주민은 주변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주변지역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주변지역이 해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변지역 보전을 위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 2 장 주변지역 보호

제6조(주변지역 보호의 기본원칙)
①주변지역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1. 민족문화 유산으로서 전통사찰 건조물 및 문화재 유지·관리
 2. 자연생태계 해손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관리
 3. 전통사찰의 수행·포교환경 침해 방지
 4. 건축물의 설치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전통사찰 경관과의 조화유도 및 시계차단방지
- ②시장은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효율적으로 주변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통사찰보존법,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조사·활용, 총체적인 연계를 통하여 주변지역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주변지역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시장은 주변지역의 보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관리 계획 등이 포함된 주변지역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지역 보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2. 주변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가. 주변지역의 위치·면적 및 범위

3. 주변지역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주변지역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전통사찰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건축법 제 4조에 의하여 설치된 제천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천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여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⑤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주변지역 관리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형별로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변지역의 시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높이 제한

2. 주변지역의 조화를 이루도록 색채, 형태, 디자인 고려

3. 건축물 주변의 녹지보전과 조성을 통하여 주변지역과 일체감 유지 등

제9조(주변지역의 적정관리) ①시장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변지역에서 각종 건축 및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건축 및 개발사업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당해 전통사찰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천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시장은 주변지역에서 각종 건축 및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기본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천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 조언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하여 著作物을 전송하는 경우에도 著作物의 이용허락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著作物의 著作財產權에 傳送權을 추가함으로써 컴퓨터通信 등에 의한 傳送으로부터 著作物의 權利를 보호하도록 함(法 제2조제9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

나. 公衆用複寫機에 의한 著作物의 복제가 빈번하게 대량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公衆用複寫機에 의한 複製로부터 著作物를 보호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公衆用複寫機에 의한 복제에 대하여는 著作物의 이용허락을 받은 후 복제할 수 있도록 함(法 제27조 제1항 단서 신설).

다. 電子圖書館 구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圖書館이 圖書 등의 著作物을 컴퓨터 등으로 복제하여 당해 圖書館 및 다른 圖書館의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에는 著作物의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法 제28조제2항 신설).

라. 著作物에 대한 權利關係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著作物 등이 등록할 수 있는 사항을 확대하고, 등록된 著作物 등을 고의로 침해한 者에 대한 損害賠償請求에 있어서는 그 침해행위에 過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法 제51조제1항 및 제93조제4항).

마. 著作物侵權에 대한 罰則을 현행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서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 이하의 罰金으로 상향조정함(法 제97조의5).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사찰보존법증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령 김 대 중 인

2000년 1월 12일

국무총리 김 종 필

국무위원
문화관광부장관 박지원

◎法律 第6,135號

傳統寺刹保存法中改正法律

傳統寺刹保存法중 다음과 같이改正한다.

第6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6條의2(傳統寺刹保存區域 주변지역의 보호) 建築法 第8條第1項의 許可權者는 傳統寺刹保存區域 주변에 傳統寺刹의 보호와 尊嚴 및 風致保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條例로 정하는 지역안에서 建築을 許可하는 것이 당해 建築物의 용도·규모 등에 비추어 험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建築法 第4條에 의하여 설치된 建築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建築許可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附 則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傳統寺刹保存法 改正理由 및 主要骨子

建築許可權者가 傳統寺刹保存區域周邊에서 建築을 許可하는 것이 傳統寺刹의 保護와 風致保存에 험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建築許可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시행일: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2000. 4. 13.) <법제처 제공>